

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229호)

◦ 2001.12.20.

◦ 총무재무위원회

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0.31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1. 11. 2
- 다. 상정일자 : 2001. 12.20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117회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(1회1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차천복)

가. 제안이유

사무관리규정의 개정시행(대통령령제17344호 2001. 8. 25) 및 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개정시행(행정자치부령제125호 2001. 2. 14)에 관련사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, 전자문서확대 및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도입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함. (안제2조제2항)
- (2) 동장의 공인 및 동사무소 전용 구청장의 공인은 모두 동장이 관수함. (안제3조제4항)
- (3)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 (안제8조의2)

2. 검토결과

- 동 조례안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도입에 따른 공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은
 -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 사용하도록 함. (안제2조제2항)
 - 일반사무용공인과 민원사무용공인중 민원사무용공인은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도록 함. (안제3조제2항)
 -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동장의 공인 및 구청장공인을 중전 주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가 관리하던 것을 모두 동장이 관수 하도록 함. (안제3조제4항)
 -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관서규정 신설(안제5조단서)
 -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접수하는 인영색깔은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함. (안제6조의2신설)
 -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. (안제8조의2, 제1항내지제4항)
 - 구청장 공인의 규격을 2.4cm에서 3.0cm으로, 보건소장 공인의 규격을 2.1cm에서, 2.4cm로 확대함. (별표1)
 -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을 신설함. (별지2호2서식)

□ 검토의견

위 내용을 검토한 바,

- 행정기관의 관인관리 등 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제17344호 2001. 8. 25 일부개정)이 개정되었고
- 관련근거로는 2001. 2. 14. 개정된 동 규정 제36조 제3항의 전자이미지 관인규정 및 제39조 제3항의 전자이미지 관인재등록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공인조례도 2001. 7. 16. 개정한 바 있으며,
-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및 안제5조, 안제6조의3, 안제8조의2는 각각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3조의2, 제5조, 제6조제2항, 제10조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문서 및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,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 안제8조의2의 제1항 및 제3항중 “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”을 “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”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.
 - 제11조중 “공인을 교부”를 “공인(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외한다)을 교부”로 수정
- 별표 제1호의 직인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 별표 1, 서울시공인조례 제4조 별표1의 규정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인도 구청장, 보건소장, 동장 및 4·5급,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, 6급으로 보하는 위 등으로 구분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.
- 그리고 제5조 조문의 제목중 “공인의 내용”에서 “인영의 내용”으로 수정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)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중 제3항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서초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구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조례의 흐름이나 의미에 타당하지 않은지 ?
- 답) 구청장으로 표시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장으로 표시한 이유는 전자결재를 하게되면 구청내에도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시한것임.

- 질) 개정하려는 공인의 규격을 보면 구청장의 공인을 2.4cm에서 3cm로 늘리고 보건소장의 공인규격을 1.2cm에서 2.4cm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공인조례가 서초구만의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공인조례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장도 공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에서 규정한 공인의 규격을 벗어나게 개정할 사유가 있는지 ?
- 답) 제출한 개정안에서와 같이 공인의 규격을 변경하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나 개정하지 않아도 됨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

- 정길자 의원 : 수정 동의안 발의

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표1의 공인의 규격은 현행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함.

6. 수정안의 요지 : 별첨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체계자구정리내용 : 없음